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1996. 9. 6.

발 의 자 : 문종준의원의외 6인

1. 제안이유

- '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.

2. 주요골자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'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그 위원의 정수는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

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